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2020헌마771 대중교통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위헌확인
청 구 인 김명호



결 정 일 2020. 6. 9.

주 문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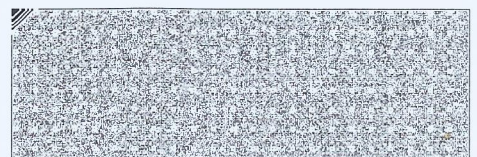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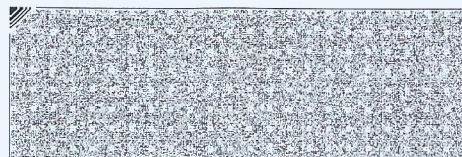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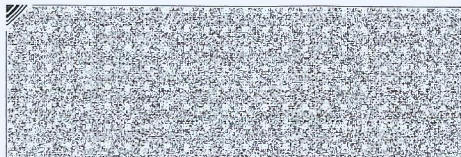
이 유

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

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

재판관 이종석 이 종 석

재판관 문형배 문 형 배



정보입니다.

2020. 6. 9.

헌 법 재 판 소

법원서기관 유준영



1. 헌법재판소법 제36조(증국결정)에 따른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같은 법 제77조(전자서명 등)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.
2. 아래 바코드는 재판문서 정보 등의 위·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 문서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 하시고자 하는 경우 전자헌법재판센터 (<https://ecourt.court.go.kr>, 자료센터>FAQ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2020-1000129892-6CA41

